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현준

전화 02-3270-4394

## 보도자료

2021. 7. 9.(금)

### 제 목

## 「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」 수사 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7. 8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2021. 7. 8.(목)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이상현)는,
  -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2달 이상 감금하며 지속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살해한 피고인 A,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보복살인등)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
  - A, B의 약취 범행을 도와준 피고인 C를 영리약취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마포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, 송치 후에도 관련자 조사,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분석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, 별도의 폭력 행위를 추가로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였음
- 한편, 송치 직후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하고, 유족을 위하여 주거지 부근 검찰청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

# 1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① 피고인

- A○○(20세, 대학생, 피해자의 고교 동창), 구속 기소
- B○○(20세, 대학생, A의 친구), 구속 기소
- C○○(20세, 대학생, 피해자의 고교 동창), 불구속 기소

### ② 공소사실 요지

#### ● 피고인 A, 피고인 B

- '20. 9.경 ~ '20. 11.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]
- '20. 10.경 ~ '20. 11.경 청소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, '21. 5.경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
- '21. 3.경 고소취소,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서울로 약취 [영리약취]
- '21. 4. 1.경 ~ '21. 6. 13.경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감금등)]
- '21. 3.경 ~ '21. 6.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취소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]
- '21. 4.경 ~ '21. 6.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만 원 상당을 갈취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
- '21. 4.경 ~ '21. 6.경 폭행·상해, 케이블 타이로 신체 결박 후 감금 및 음식물 제공 제한 등을 지속하고, 특히 '21. 6. 초순경 건강 악화로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으로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하여 '21. 6. 13.경 폐렴 및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살해등)]

#### ● 피고인 C

- '21. 3.경 A·B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주는 등 약취를 방조 [영리약취방조]

## 2

### 수사 경과

- 6. 13. 피고인들의 119신고 후 119구급대원의 신고로 수사 개시
- 6. 15. 피고인 A·B, 살인 혐의로 구속
- 6. 19. 피고인 C,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인지
- 6. 22. 마포서, '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살인등)' 등 죄명 변경 후 송치
- 6. 22.~7. 7. 검찰, 송치 후 보완수사
- 7. 8. 피고인 A·B 구속 기소, 피고인 C 불구속 기소

## 3

### 수사 결과

- 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(문자메시지, 통화녹음, 동영상 등) 추가 분석, 피고인들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갈취한 사실, 고소취소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취한 후 장기간 감금하며 폭력, 강요, 공갈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을 규명
- 특히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'잠 안재우기 고문'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들을 추가로 밝히고,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
-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유족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 장례비 지급,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였고, 향후에도 유족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할 예정

## 4

### 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 ☑